

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-3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8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최근 오피스텔, 다가구(다세대)주택 등의 증가추세로 주차난이 야기되어 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원활한 차량 소통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함

☐ 주요골자

-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오피스텔의 경우 시설면적 150㎡당 1대에서 75㎡당 1대 이상으로
- 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200㎡당 1대에서 134㎡당 1대, 숙박시설은 100㎡당 1대로 하고
- 다가구(다세대)주택은 1가구(세대)당 1대 이상으로 함

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 · 과 · 소		교통행정과 940-4788
임 안 자	교통행정과장	정 종 훈
	교통지도담당	우 상 명
	담 당 자	안 승 먼

[별표 2]

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(제19조 관련)

시 설 물	설 치 기 준
1. 위락시설	시설면적 100㎡ 당 1대
2.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장 을 제외한다) 판매 및 영업시설, 의료시설(정신병원· 요양소·격리병원을 제외한다), 운동시 설(골프장·골프연습장·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), <u>업무시설</u> ,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	시설면적 150㎡ 1대. 다만, <u>업무 시설중 오피스텔의 경우는 75㎡ 당 1대 이상</u>
3.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 시설, 숙박시설	<u>시설면적 134㎡당 1대</u> <u>단, 숙박시설은 100㎡당 1대</u>
4의1. 단독주택	시설면적 130㎡초과 200㎡이하는 1대 200㎡ 초과인 경우는 1대에 200㎡를 초과하는 130㎡당 1대 를 더한 대수
4의2. 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	<u>1가구(세대)당 1대이상</u>
5. 공동주택(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를 제외한다)	시설면적 120㎡당 1대
6. 골프장.골프연습장.옥외수영장.관람장	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
7. 기타건축물	시설면적 300㎡당 1대
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, 준도시지역, 준농림지역에서의 시설물	상기 시설물용도의 설치기준에 의한다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	개정안	
[별표 2] (제19조관련)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		[별표 2] (제19조관련)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	
시설물	설치기준	시설물	설치기준
1 (생략)	(생략)	1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2.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장을 제외한다) 판매 및 영업시설, 의료시설(정신병원·요양소·격리병원을 제외한다), 운동시설(골프장·골프연습장·육외수영장을 제외한다), 업무시설, 공공용시설중 방송국	시설면적 150㎡ 1대	2.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장을 제외한다) 판매 및 영업시설, 의료시설(정신병원·요양소·격리병원을 제외한다), 운동시설(골프장·골프연습장·육외수영장을 제외한다), 업무시설, 공공용시설중 방송국	시설면적 150㎡당 1대 다만,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경우는 75㎡당 1대 이상
3.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숙박시설	시설면적 200㎡당 1대	3.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숙박시설	시설면적 134㎡당 1대 단, 숙박시설은 100㎡당 1대
4.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	시설면적 130㎡초과 200㎡이하는 1대 200㎡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㎡를 초과하는 130㎡당 1대를 더한 대수	4의1. 단독주택	시설면적 130㎡초과 200㎡이하는 1대 200㎡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㎡를 초과하는 130㎡당 1대를 더한 대수
		4의2. 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	1가구(세대)당 1대의상
5-7 (생략)	(생략)	5-7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